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의안번호 제340호,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공포 '21.4.20. 시행 '21.10.21.) 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(공포 '22.1.4. 시행 '22.7.5.)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,
-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·송부받은 사건의 조사 및 수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,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시 공익제보자의 책임을 감면 가능토록 하였으며,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사유 등을 확대한 것입니다.

- 서울시가 공익제보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,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.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